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 2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2. 3

다. 상 정 일 자 : 2001. 2. 3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노 양 현

나. 개정사유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 식품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 (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 (안 제3조)
- 기금계좌 설치는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 (안 제4조)
-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 출납원은 위생담당

으로 함 (안 제5조)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하
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위촉)
(안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운용, 기금관
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안 제7조)
- 융자사업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 취급 가능
토록 하고 조건 이율 한도액은 위원회에서 정함
(안 제9~11조)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고 군수는 기금 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
지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함. (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2000. 1. 12개정)에서 식품진
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 동 기금의 설치·운영으로써,
 - 영업자에게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융자 받을수 있
도록 하여 경제적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
업 등을 보다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
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전망됨.

-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는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에서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운용계획등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활동여부에 따라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가가 판가름 된다고 보여지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

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 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